

화순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7. 5. 28 화순군수
- 나. 회 부 일 자 : '97. 5. 28
- 다. 상 정 일 자 : '97. 6. 23 (제5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 제안 설명요지

- 가. 제 안 자 : 재무과장 정 부 응
- 나. 개정사유
 - 현실에 불합리한 용어와 조문을 정비코자 함.
- 다. 주요내용
 - 조의 제목 "사용료등 수가기준"을 "사용료등 수가"로 하고 "수가 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하되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를 "수가는 위원회에서 실정에 맞게 조정한다."로 하며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연도개시 30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를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로 개정(안 제10조 제1항 제2항)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민병항)

- 동 조례 개정안은 불합리한 용어 및 관련 조항을 변경 정비코자 하는 개정 조례로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답변 요지

" 생 략 "

5. 토론요지

" 생 략 "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

○ 수정가결내용

- 개정안 제10조 (사용료등 수가기준) 제2항중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를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고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로 수정가결

첨 부 : 화순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끝.

화순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7-84
----------	-------

제출년월일 : 1997. 5. 24

제 출 자 : 화순군수

1. 제안사유

화순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를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주요골자

조명 "(사용료등 수가기준)"을 "(사용료등 수가)"로 하고 "수가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하되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를 "수가는 위원회에서 실정에 맞게 조정한다"로 하며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연도개시 30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를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로 개정 (안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화순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목 "사용료등 수가기준"을 "사용료등 수가"로 하고, 동조 제1항중 "수가 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하되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를 "수가는 위원회에서 실정에 맞게 조정한다"로 하며, 동조 제2항중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연도개시 30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를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 (사용료등 수가기준) ①복지회관의 <u>사용료등 수가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하되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u></p> <p>②읍면장은 복지회관의 사용료등 수가를 매년위원회의 <u>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연도개시 30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u></p> <p>단. 별도의 공고가 없는 경우 전년도 의 수가에 따른다.</p> <p>③ (생략)</p>	<p>제10조 (사용료등 수가) ① - - - - - - - - - - 수가는 <u>위원회에서 실정에 맞게 조정한다.</u></p> <p>② - - - - - - - - - - 의결을 거쳐 <u>군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u></p> <p>- - - - - - - - - -</p> <p>③ (생략)</p>